

세법연구 06-05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2006. 11

안경봉 · 정희선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5
II. 현행 소득세법상 무상이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및 문제점	6
1. 현 황	6
2. 문제점	7
III. 외국의 입법례 - 무상이전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8
1. 미 국	8
2. 캐나다	10
3. 영 국	11
4. 일 본	12
5. 정 리	14
IV. 무상이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방안	15
1. 무상이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조합	15
2. 유형별 검토	16
가.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6
나. 취득가액 승계제도	20
다. 유형별 검토 결과	24
3. 각 유형별 세액효과	24
가. 사례 1	25
나. 사례 2	27
다. 세액효과 분석	28
V. 결 론	31

표차례

〈표 Ⅲ-1〉 무상이전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외국의 규정	14
〈표 Ⅳ-1〉 무상이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조합표	15
〈표 Ⅳ-2〉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제1안): 세부담 비교표	26
〈표 Ⅳ-3〉 증여세 중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제2안): 세부담 비교표	26
〈표 Ⅳ-4〉 증여세 중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증여세×양도차익/증여가액) 증여세만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제3안): 세부담 비교표	26
〈표 Ⅳ-5〉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제1안): 세부담 비교표	27
〈표 Ⅳ-6〉 증여세 중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증여세×양도차익/증여가액)만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제2안): 세부담 비교표	27
〈표 Ⅳ-7〉 증여세 중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증여세×양도차익/증여가액)만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제3안): 세부담 비교표	28

I. 서론

부의 무상이전시 무상이전자 입장에서는 무상이전 시점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만큼 자본이득이 발생하며, 무상취득자 입장에서는 무상이전 시점의 시가만큼 이득이 발생한다.

무상취득자 입장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하고 있다. 반면, 무상이전자 입장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의 경우 현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의 무상이전은 양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상이전 시점에서는 동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무상취득자가 향후 관련 재산을 양도시에도 현 소득세법에 의하면 무상이전 시점에서의 시가인 상속가액 또는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 영원히 과세에서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소득세법상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공평하고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Ⅱ장에서 현 소득세법상 무상이전 자산의 양도소득 관련 조항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동 사안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적정하고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현행 소득세법상 무상이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이전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특히 취득가액의 계산과 관련한 현행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원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소득세법 제97조 1항). 무상이전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을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163조 9항).

다만, 무상이전받은 재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에 한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 첫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다(소득세법 97조 4항). 또한 배우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101조 2항). 즉,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당초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더 작은 경우,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문제점

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상속하기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증여재산 역시 상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가 취득하여 증여하기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나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초과(50%, 60%)해 나가는 현실에서 상속개시일·증여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 규정은 양도소득세 초과제도의 회피기회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즉, 당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상속·증여한 후 상속인 혹은 수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당초 소유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므로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종신까지 보유하다가 상속시키는 유인을 줌으로써 부동산의 유동성 또한 저해하게 된다.

Ⅲ. 외국의 입법례 - 무상이전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상속 또는 증여 등의 사유로 무상이전이 발생할 경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놓고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유형 1) 무상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 (유형 2) 무상이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실제 그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관련 세금을 이연하는 방법 : 취득가액 승계제도
- (유형 3) 무상이전 시점까지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하지 않는 방법 : 신규취득가액 기준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미국

미국의 경우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 과세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인계된다(IRC §1015). 그리고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증여자단계의 가치상승분과 수증자단계의 가치상승분이 함께 과세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내국세입법 제1015조는 1958년에 개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가액만큼 취득가액을 인상하는(step-up basis) 것으로 하였다(IRC §1015(d) (1)-(5)).

한편 상속세의 경우, 1969년 미국 재무성 제안에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자

본이득세를 과세할 것을 입법화하자고 주장된 바 있었다. 그 내용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는 그 사망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당해 자산의 가치증가분을 사망자의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자본이득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상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의 자본이득은 무상이전시에 평가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다(step-up basis or fresh-start basis). 자본적 자산에 대한 가치하락분은 자본손실로 다룬다. 그리고 자본적 자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은 이를 유산에 대한 채무로 하여 유산세의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공제하도록 한다.

이후 1976년 내국세입법 개정에 따라, 상속 또는 유증 모두에 대하여 무상취득자의 자본이득계산상 공제하는 원가인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취득가액 승계제도(carry-over basis)를 채택하였다(IRC §1023). 그런데 1978년에는 그 실시 시기를 1980년으로 연기시키더니, 1980년에는 내국세입법 제1023조를 삭제함으로써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 승계제도마저 폐지해 버렸다. 동법을 폐지한 것은 자산가 계층의 반대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까닭은 당초 취득가액 승계제도가 세무행정에 무거운 부담을 준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즉, 과세행정에 있어서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망자의 실질취득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납세의무자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취득가액 승계제도 대신 신규취득가액 기준에 의해 왔었다.

하지만 2001년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망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했다. 자본이득 계산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승계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조정취득가액¹⁾과 사망 당시의 재산에 대한 공정시장가격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²⁾.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의한 면제 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인하조정하도

1) 이는 사망시점까지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무상취득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는 의미임.

2) 최명근,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pp. 28~30.

록 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를 폐지하면 조세회피가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는 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5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35%로 함으로써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 35%와 일치시키고, 신규취득가액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요컨대, 미국의 경우 상속에 대해서는 세 번째 유형인 신규 취득가액 기준에서 두 번째 유형인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하였으면서도, 증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 번째 유형인 신규취득가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입법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캐나다

캐나다는 소득세제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해 유상처분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무상이전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 자는 그 증여한 재산의 공정시장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한 것으로 의제한다.

다만,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공정시장가격 상당액은 무상이전자의 수입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배우자간의 상속 또는 증여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의 자본이득은 마지막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 또는 양도할 때에 비로소 과세되는 것이다. 물론, 사망시점의 의제자본이득 과세는 재산의 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구조이다³⁾.

요컨대, 캐나다의 경우 무상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첫 번째 유형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무상이전에 한해서는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두 번째 유형을 가미한 형태의 입법례라 할 수 있다.

3) Kesti, Juhani, *European Tax Handbook*, Amsterdam: IBFD 2003.

3. 영국

영국에서는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상속에 의한 무상이전에 대하여 자본이득세와 자본이전세를 함께 과세하면서 자본이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본이득세를 채무로 보아 유산가액에서 공제해 주었다. 그러나 1971년부터는 자본이전세만을 과세하였고, 이후 1986년부터는 자본이전세가 상속세로 대체되었으며 현재는 가치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상속세만을 과세한다. 즉, 상속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무상취득자가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계산상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신규취득가격인 무상이전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으로 의제하여 증여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TCGA 1992, s 17(1)(a)). 그런데 증여의 경우 이연공제(holdover relief)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연공제청구(holdover relief claim)는 자본이득 전체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 즉, 부분적인 이연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연공제의 결과, 증여자에 의해 구체화된 자본이득은 0이 되고,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동 이연금액만큼 감소된다.

한편, full taper relief⁴⁾는 증여시점에서 주어진다. 또한 수증자의 taper relief 기간은 증여시점에서 시작하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indexation relief 기간에 있어서 수증자의 물가지수연동공제(indexation allowance)⁵⁾는 감소된 숫자를 기초로 주어진다. 이연된 이득은 은퇴 공제(retirement relief)⁶⁾를 이용한 연 후에 증여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증여자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이 £40,000이었고, 4년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 자산가치가 £100,000일 때 증여자가 그 자산을 수증자에게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60,000의 이득은 25% full taper relief를 받아 £15,000으로 감소된다. 그리고 증여자가 이연(holdover)을 선택하면 증여자에게 부과대상이 되는 이득

4) taper relief라 함은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자산 매각시 과세대상 이익을 감해주는 것을 뜻함.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5%의 full taper relief를 적용받을 수 있음.

5)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매각대상 자산의 취득원가를 조정해 줌.

6) 55세 이상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한 감면 혜택.

은 £15,000에서 “0”으로 감소된다. 한편, 수증자가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다음 £150,000에 그 자산을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처분으로 인한 수증자의 이득은 판매 가격 £150,000에서 취득원가(base cost) £100,000을 차감하고 이연된 이득 £15,000을 합하여 £65,000이 된다. 그리고 25% taper relief는 이득을 £65,000에서 £16,200으로 감소시킨다.

즉, 증여에 대해 시가에 의해 자본이득세를 계산하고 있지만 동 자본이득세는 수증자에게로 이연청구가 허용되며, 또한 taper relief의 효과로 인해 실제적으로 세부담액은 매우 적다.

한편, 이연공제가 허용되는 적격 처분(disposals)은 다음의 다섯 가지에 한한다. 사업용 자산(business assets), trading group의 지주회사 혹은 trading company의 주식과 증권(shares and securities), 농업용 토지, 상속세목적상 과세대상이 되는 이전(transfers),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이다.

요컨대, 영국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세 번째 유형과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처분으로 의제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첫 번째 유형을 결합한 형태의 입법례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의 경우 자본이득세를 수증자에게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taper relief의 규정과 함께 적용할 경우 실제적인 자본이득세 부담이 매우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일본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에 대해 有·無償을 묻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의 본질은 가치의 증가 유무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고서도 자산의 양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없으면 실제로는 과세되지 않는다. 즉, 양도에 관해 권리의 이전 유무가 중요하고 이는 유상에 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과세에 있어서는 수입금액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상양도에 대해 비과세할 경우, 계속적인 무상양도를 통해 취득가액만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샤프프권고에서는 양도소득의 본질을 중시해서 상속 및 증여를 양도로 간주하여 과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 권고를 반영하여 현재 소득세법 59조의 무상양도에 대한 간주양도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일본 소득세법 59조에 의하면, 증여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들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증여는 법인에 대한 것에 한하고, 상속은 한정승인⁷⁾에 관계되는 것에 한하며, 유증은 법인에 대한 것 및 개인에 대한 포괄유증⁸⁾ 중 한정승인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사실 동 조항에서 제한규정을 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무상이전을 양도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상속인 및 수증자에게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문제되고, 피상속인 내지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문제되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반면, 법인에 관해서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 따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위에 열거한 항목을 제외한 상속 및 개인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하고,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인계되는 것(carry-over)으로 간주한다. 즉, 일본 소득세법 60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증여 등의 사유로 취득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그 자가 계속해서 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증여자, 피상속인, 유증자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소득계산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의 상속은 한정승인에 관계된 것을 제외하며, 유증은 포괄유증 중 한정승인에 관계된 것을, 증여는 법인에 대한 증여를 제외한다.

그리고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에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의 계산시 상속인이 과거 납부한 상속세액을 그 취득비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조세특별조치법 39조).

7)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상속의 승인을 말함.

8) 포괄유증은 유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임. 포괄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물권적이고 유증의무자의 이행문제가 생기지 않음(민법 1078조). 포괄유증의 승인·포기는 상속의 승인·포기의 경우에 준함.

5. 정 리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안, 즉 무상이전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외국의 규정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무상이전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외국의 규정

	상 속 재 산	증 여 재 산
미 국	취득가액 승계제도 (유형 2)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규취득가액 기준 (유형 3)
캐나다	유상처분으로 의제 (유형 1) 단, 배우자간 상속의 경우 과세이연 (유형 2)	유상처분으로 의제 (유형 1) 단,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과세이연 (유형 2)
영 국	신규취득가액 기준 (유형 3)	유상처분으로 의제(유형 1)
일 본	취득가액 승계제도 (유형 2) 단, 상속은 한정승인에 관계되는 것에 한해, 유증은 포괄유증 중 한정승인에 관계된 것에 한해 유상처분으로 의제함 (유형 1)	취득가액 승계제도 (유형 2) 단, 법인에 대한 증여에 한해 유상처분으로 의제함 (유형 1)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이전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유형 3인 신규취득가액 기준에 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무상이전 여부 및 그 시점에 따라 조세부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과세형평의 논리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유형 1과 유형 2의 장단점 및 세액효과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과세환경에 적합한 과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V. 무상이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방안

1. 무상이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조합

제Ⅲ장에서 제시한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세 가지 과세방법을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각각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9가지 과세조합으로 요약된다.

〈표 IV-1〉 무상이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조합표

분류	상속재산	증여재산	비 고
case 1	비과세 ¹⁾	비과세	현행 우리 제도
case 2	비과세	취득가액 승계	
case 3	비과세	과세	영국의 사례
case 4	취득가액 승계 ²⁾	비과세	미국의 사례
case 5	취득가액 승계	취득가액 승계	일본, 캐나다 사례
case 6	취득가액 승계	과세	
case 7	과세 ³⁾	비과세	
case 8	과세	취득가액 승계	
case 9	과세	과세	캐나다, 일본 사례

- 주: 1) 비과세라 함은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아예 과세하지 않는 유형 3을 의미함.
 2) 취득가액 승계라 함은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무상취득자의 양도시점으로 이연하는 유형 2를 의미함.
 3) 과세라 함은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을 무상이전 시점에서 과세하는 유형 1을 의미함.

2. 유형별 검토

위의 각 분류별 장단점은 결국 '무상이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법' 및 '취득가액 승계제도'와 연관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우선 두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표 IV-1>의 과세조합 중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우리의 과세환경에 비추어 고려할 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 장점 및 단점

가) 장 점

첫째, 무상이전 시점은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시점이다. 즉, 양도소득의 본질인 증가된 가치가 실현된 시점이며, 다만 유상의 대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동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상이전 단계에서 무상이전자에게 무상이전시의 시가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동 자본이득이 실현된 시점에서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둘째,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가치증가분은 무상이전자의 보유시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다. 따라서 이를 무상이전자가 부담하는 것이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통해 무상취득자가 부담하는 것보다 과세논리상 타당하다.

셋째, 무상이전 시점에서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세제의 간편성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채택할 경우 여러 단계에 걸쳐 무상이전이 있었다면 최초 취득가액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며,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단 점

첫째, 무상이전 시점마다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과세행정 역시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세무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무상이전 시점마다 납세자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를 해서 가치증가분을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과세당국이 동 신고서를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는 작업은 조세순응비용 및 행정비용이 매우 높다.

둘째, 무상이전은 대가관계가 없는 자산의 양도로, 납세자가 관련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동 사안에 대한 과세를 납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클 수 있다. 물론 동 문제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적절한 과세논리를 세울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과세 관련 문제가 단지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고 해당 국가의 조세 환경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중과세 문제는 역시 납세자를 설득시키기 어려우며 조세저항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2) 각 case별 고려사항

가) 증여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case 3)

(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병존 문제

증여 시점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것은 결국 증여행위를 양도로 간주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행위에 대해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리면서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물린다면 논리상 맞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증여를 양도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가 일어날 수 있다.

첫째, Mitchell Gans가 *Tax Note*지에서 지적한 것이다. 가치가 많이 증가(자본이득의 발생)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는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세율 20%의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증여세가 폐지된다면 그 부모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고서 주식을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자녀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⁹⁾.

둘째, 증여세 폐지에 대해 New York Times의 Johnston 기자가 보도한 상속세 전문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부유한 투자자는 가치가 증가한 주식을 소득세 결손신고를 하는 친구에게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 자본이득이 결손금과 상계되어 자본이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첫 번째 사유의 경우 우리는 양도소득에 대해 분류 과세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두 번째 사유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리의 조세 환경에서도 발생 가능하며 따라서 이로 인한 조세회피 역시 가능하므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다¹⁰⁾. 실제로 유산세의 폐지를 입법한 미국의 경우에도 증여세 폐지시 발생할 조세회피를 예상하고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신규취득가액 기준을 유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논리상 병존하기 어렵지만 증여세의 존속이 불가피함을 고려하였을 때 증여재산의 양도간주 방법을 일본과 같이 법인에 대한 증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증여라 하더라도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동 증여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로의 증여로 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참조)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양도간주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친족간의 양도를 증여추정시 간주 양도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특정인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해 증여

9) 미국은 자본이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경우 자본이득세 한계세율은 10%이다.

10) 자산의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만을 과세하는 것은 자산간의 수평적 공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상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견해로는 김갑순·정지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의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XI-1, p. 71. 참조.

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위와 같이 양도자산에 대해 증여 추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현 세법에 의하면 양도자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대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런데 증여를 양도로 간주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채택할 경우 증여에 대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로서는 거래에 따른 세법상 효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3)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 규정과의 관계

증여재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게 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의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란 대가를 받고서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만을 의미(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참조)한다. 하지만 증여재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有·無償을 불문하고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나)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case 9)

상속이라는 행위는 그 특성상 무의도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양도로 간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고자 한다. 만일 상속을 양도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상속은 한정승인에 관계되는 것에 한하며, 유증은 법인에 대한 것 및 개인에 대한 포괄유증 중 한정승인에 관계된 것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case 3에서 고려한 사항이

역시 적용될 것이다.

나. 취득가액 승계제도

1) 장점 및 단점

가) 장 점

첫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위 내에서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상이전 시점은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시점이긴 하나 무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무상취득자가 해당자산을 유상양도할 때 과세함으로써 동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무상취득자의 양도시점은 해당 자산에 대한 현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동 시점이 곧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셋째, 상속 및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나) 단 점

첫째,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상속한 특정재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최소한 두 세대 혹은 여러 세대에 소급해서 그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 과세행정에 있어서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망자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자도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이유로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폐지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동

문제점은 취득가액 승계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해당 당국이 무상이전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 등”)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누락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상속세 등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속인 및 수증자의 해당자산 양도시점에서 과세되므로 상속세 등의 소득세 보완 역할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경제적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무상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과세 논리에 어긋난다. 물론 무상취득자는 대가관계가 수반되는 양도를 통해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할만한 능력을 갖추었지만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무상이전자 스스로가 지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기 때문이다.

2) 각 case별 고려사항

가) 증여재산에만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case 2)

(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간의 이중과세 문제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증여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증여세를 무상이전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이다.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무상이전시 무상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관련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 때 증여세는 무상이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무상취득자가 지불한 부대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무상이전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인 증여세를 승계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향후 무상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함께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증여세 중 증여자의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만큼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자산의 무상이전시 납부한 증여세에서 증여세 전체 과세표준 중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무상이전시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한 보완성격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무상이전자 단계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향후 무상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될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 중 동 양도소득세의 예납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에 대해 추후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해주겠다는 논리이다. 엄밀히 말해, 증여세 중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아닌 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한 방법이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8항 참조).

셋째, 두 번째 방법과 같은 논리로 증여세 중 양도소득세의 예납적인 성격을 갖는 부분에 대해 수증자가 무상이전받은 자산을 양도시 증여자의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서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넷째, 동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폐지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를 폐지할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세회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존속시키되, 미국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규취득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상속재산에만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case 4)

(1)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간의 이중과세 문제

case 2의 증여재산에만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것과 같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정방법으로 추후 상속자가 무상이전받은 자산을 양도시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거나 상

속세 중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동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폐지 주장 역시 있을 수 있다.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상속시점의 시가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중에 증가한 자본이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취득가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피상속인 단계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소득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지만 상속세는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왔는데,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한 상속세의 소득세 보완 역할마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상속인의 해당자산 양도시점에서 과세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세는 무상이전 자산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목적 외에 부의 집중억제 및 기회균등의 제고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이는 오히려 상속세를 과세하는 논리로서 현재 우리의 국민정서에 더 부응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가 장구하고, 축적된 민부(民富)의 규모가 우리보다 큰 선진국들이 현재 상속과세에 대해 크게 회의를 품고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지브롤터에서 상속과세를 폐지했으며, 미국 역시 2001년에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자본이득을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통해 과세하는 입법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통해 무상이전 자산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상속세의 폐지 논의 또한 함께 고려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상속 및 증여재산에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case 5)

위 case 2와 case 4의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만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역시 적용된다.

다. 유형별 검토 결과

무상이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법 및 취득가액 승계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해 본 결과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은 무상이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무상이전 시점은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이 실현된 시점이며 이와 더불어 무상이전자의 보유시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무상이전자가 부담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세관련 문제를 단지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 소득세법상 양도에 대한 정의와 무상이전 시점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동시에 과세되는 것이 가혹하다는 국민정서 등을 반영하여 이를 완화한 방법이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무상취득자가 유상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연하는 취득가액 승계제도이다.

즉,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놓고 논리적으로 더 우수한 방법은 무상이전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취득가액 승계제도인 것이다.

3. 각 유형별 세액효과

각 방안별 양도소득세 세액효과의 비교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가정 및 상황 설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동일하고 세액계산구조가 비슷함을 고려했을 때 증여 후 양도에 대한 세액효과만을 분석하더라도 두 방안의 세액효과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례 설정과 관련하여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에 차이를 두어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즉, 일반적인 상황인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와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양도차익이 큰 경우를 각각 사례 1과 사례 2로 구분하였다. 이는 각 상황별로 세액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각 사례 내에서는 재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와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부담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그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하였다. 또한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현재와 같이 비과세하는 경우와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및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로 나누어 세부담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2절에서 언급한 3가지 방법을 각각 제1안, 제2안, 제3안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세액효과를 분석하였다. 제1안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은 증여세를 증여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본 것이므로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한 경우와 양도세를 과세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적용하였다. 반면, 제2안과 제3안의 증여세 중 증여자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필요경비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방안은 증여세를 수증자가 추후 납부할 증여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인 성격으로 본 것이므로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하였다. 즉, 제2안과 제3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수증자의 양도세를 계산하였다.

가. 사례 1

- A.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한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 B. 위 주택 보유자가 4년 보유한 주택을 증여한 후 자녀(1세대 1주택자)가 6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 B-1. 현재의 세부담
 - B-2. 취득가액 승계제도 도입시의 세부담
 - B-3.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

※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8%로 가정

〈표 IV-2〉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제1안): 세부담 비교표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A. 직접양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										
			B-1. 현재			B-2. 취득가액 승계			B-3. 양도세 과세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자	수증자	소계				
600	278	-	60	-	60	60	-	60	60	-	-	-	60
1,000	463	39	120	29	149	120	26	146	120	9	15	24	144
1,500	695	64	215	50	265	215	42	257	215	16	24	40	255
2,000	926	90	332	71	403	332	56	388	332	26	30	56	388

〈표 IV-3〉 증여세 중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제2안)
: 세부담 비교표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A. 직접양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										
			B-1. 현재			B-2. 취득가액 승계			B-3. 양도세 과세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자	수증자	소계				
600	278	-	60	-	60	60	-	60	60	-	-	-	60
1,000	463	39	120	29	149	120	35	155	120	9	29	38	158
1,500	695	64	215	50	265	215	58	273	215	16	50	66	281
2,000	926	90	332	71	403	332	81	413	332	26	70	96	428

〈표 IV-4〉 증여세 중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증여세×양도차익/증여자액)
증여세만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제3안): 세부담 비교표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A. 직접양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										
			B-1. 현재			B-2. 취득가액 승계			B-3. 양도세 과세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자	수증자	소계				
600	278	-	60	-	60	60	-	60	60	-	-	-	60
1,000	463	39	120	29	149	120	7	127	120	9	29	38	158
1,500	695	64	215	50	265	215	7	222	215	16	50	66	281
2,000	926	90	332	71	403	332	2	334	332	26	70	96	428

나. 사례 2

- A. 1세대 1주택자가 15년 보유한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 B. 위 주택 보유자가 10년 보유한 주택을 증여한 후 자녀(1세대 1주택자)가 5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 B-1. 현재의 세부담
 - B-2. 취득가액 승계제도 도입시의 세부담
 - B-3. 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

※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8%로 가정

〈표 IV-5〉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제1안): 세부담 비교표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A. 직접양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										
			B-1. 현재			B-2. 취득가액 승계			B-3. 양도세 과세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자	수증자	소계			
600	189	-	66	-	66	66	-	66	66	-	-	-	66
1,000	315	39	135	23	158	135	29	164	135	22	9	31	166
1,500	473	65	237	41	278	237	46	283	237	40	13	53	290
2,000	630	91	372	58	430	372	62	434	372	57	14	71	443

〈표 IV-6〉 증여세 중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증여세×양도차익/증여가액)만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제2안): 세부담 비교표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A. 직접양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										
			B-1. 현재			B-2. 취득가액 승계			B-3. 양도세 과세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자	수증자	소계			
600	189	-	66	-	66	66	-	66	66	-	-	-	66
1,000	315	39	135	23	158	135	34	169	135	22	22	44	179
1,500	473	65	237	41	278	237	55	292	237	40	41	81	318
2,000	630	91	372	58	430	372	75	447	372	57	58	115	487

〈표 IV-7〉 증여세 중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증여세×양도차익/증여가액)만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제3안): 세부담 비교표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A. 직접양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										
			B-1. 현재			B-2. 취득가액 승계			B-3. 양도세 과세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자	수증자	소계			
600	189	-	66	-	66	66	-	66	66	-	-	-	66
1,000	315	39	135	23	158	135	(33)	102	135	22	23	45	180
1,500	473	65	237	41	278	237	(62)	175	237	40	40	80	317
2,000	630	91	372	58	430	372	(109)	263	372	57	58	115	487

다. 세액효과 분석

제1안과 같이 증여세를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사례 1의 경우 취득가액 승계제도시 증가된 양도차익의 효과보다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함으로써 늘어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효과가 더 커 신규취득가액을 적용하는 현재보다 오히려 양도소득세액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사례 2와 같이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통하여 증가한 양도차익의 가액이 늘어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효과를 추월하게 되므로 현재의 경우보다 양도소득세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1안에서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사례 1과 같이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 취득가액 승계제도보다 오히려 더 큰 세액 감소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유기간의 분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과세표준 역시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로 분산되므로 적용세율이 감소하고,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이 증여시의 양도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추가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례 2와 같이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분산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과세표준의 분산효과가 줄어들어 현재 및 취득가액승계제도를 도입한 경우보다 양도소득세액이 증가했다.

제2안의 경우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채택한 경우(B-2)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

세하는 경우(B-3) 모두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B-1)보다 양도소득세액이 증가했다. 특히,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제1안과 비교하여 증여세를 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유기간의 분산으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감소효과가 더욱 증가하여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사례 1과 사례 2를 비교함으로써 보유기간이 증가하고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극대화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채택한 경우(B-2) 양도소득세액은 직접 양도하는 경우(A)의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반면,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B-3)는 직접 양도하는 경우(A)에 비해 양도소득세액이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안 역시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증여세 중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인데 이를 채택시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양도차익이 커지고 보유기간이 증가한 사례 2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났다. 반면,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의 경우 제2안에서와 같이 증여세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제2안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의 세액효과 분석은 직접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과세방법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제2안이나 제3안과 결합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둬줄 수 있었다.

하지만 동 방안은 증여자에게는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에게는 증여 시점에 증여세와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2안을 선택한다면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만큼은 아니지만 현재의 경우보다 증여 후 양도의 양도소득세 회피현상을 줄일 수 있고,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과는 달리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세액효과 분석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선의 조합: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제2안이나 제3안
차선의 조합: 취득가액승계제도 + 증여세 중 증여자의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2안

V. 결 론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고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인 ‘무상이전시 과세하는 방법’ 및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중심으로 그 장단점 및 세액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와 같이 비과세하거나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통해 과세이연하거나 무상이전 시점에서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 입법례의 추이를 통해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에서 무상이전 시점에서 과세하거나 또는 과세이연하는 방안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이 과세에서 배제되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유산세의 폐지와 함께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만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문제를 고려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현재의 신규취득가액 기준을 유지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무상이전에 대해 유상처분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증여재산에 한해 유상처분으로 의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무상이전재산에 대해 양도로 의제하여 왔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와 동시 과세되는 가혹함을 막고자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정 경우에 한해 유상처분으로 의제하는 한정 규정을 두어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리고 위의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본 결과, 무상이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법은 해당재산에 대한 권리가 사실

상 이전되는 시점에서 과세하므로 세제의 간편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상이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대한 정의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무상이전 시점에서 상속세 혹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서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통해 무상취득자의 양도 시점에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동시에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有償의 이전을 통해 납세자가 실제로 관련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납세 순응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액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1안을 택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취득가액 승계제도 역시 증여세 중 증여자의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2안과 함께 적용될 경우 현재의 경우보다 양도소득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대안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IV-1>의 과세조합표로 설명하자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무의도성 때문에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므로 무상이전시 비과세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인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이전시 과세하는 case 6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조합일 것이며, 무상이전 자산에 대해 모두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택하는 case 5가 차선의 조합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증여 역시 무상이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납세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조합은 case 5가 될 것이다.

한편 '취득가액승계제도 + 증여세 중 증여자의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2안'을 일반적으로 채택할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특수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소득세법 101조 2항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규정간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갑순·정지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의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XI-1.
- 노영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오재선·김완석,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 토지세제의 장기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연구보고서 제9집, 1993. 8.
- 최명근,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 _____,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6.
- 水野忠恒, 『所得稅の制度と理論』, 有斐閣, 2006.
- _____, 『租稅法』, 有斐閣, 2003.
- John Tiley, *Revenue Law*, HART Publishing, 2000.
- Juhani Kesti, *European Tax Handbook*, Amsterdam: IBFD, 2003.
- Messere K.C., *Tax Policy In OECD Countries Choices and Conflicts*, Amsterdam: IBFD, 1993.
- <http://www.hmrc.gov.uk/leaflets/cgt1.htm#f>

세법연구 06-05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2006년 11월 16일 인쇄

2006년 11월 20일 발행

저 자 안경봉 · 정희선

발행인 최 용 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6

ISBN 89-8191-327-7

* 잘못 만들어진 책을 바꾸어 드립니다.